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해 양 경 찰 청 소 속 경 찰 공 무 원
임 용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제안이유

근속승진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제도운영의 균형성을 감안하고,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한 근속승진 대상자를 적기에 임용하기 위해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경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2회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속승진임용토록 함(안 제73조제4항)
- 나. 경감 근속승진 임용일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임용예정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73조제5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 의견조회 완료(8. 30.~9. 13.) 및 인사혁신처와 협의되

있음(9. 7.~9. 8.)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제4항 전단 중 “연 1회”를 “연 2회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해당 기관의”를 “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3조(근속승진) ① ~ ③ (생략)	제73조(근속승진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<u>연 1회</u>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해당 기관의</u>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수(소수점 이하의 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)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.	④ ----- ----- <u>연 2회</u> <u>까지</u> ----- . ----- <u>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
<신 설>	⑤ 임용권자는 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일 15일 전까지 <u>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 임용 예정인원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/u>
⑤ · ⑥ (생략)	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	
연 락 처	(032) 835 - 2335